

2024. 4. 17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17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02-2133-5360

소비자보호팀장 박상진 02-2133-5374

사진 없음 사진 있음

쪽수: 7쪽

관련 누리집 <https://sftc.seoul.go.kr>

"10년 전 가입하고 잊어버린 상조, 앞으로는 매년 알려 드립니다"

- 5일(금)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'고객 납입금 통지제도' 교육 실시
- 45개 사 참여, 공정위·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법상 준수 사항·실무 사례 등 교육
- 서울시, 업계 소통·현장점검 통해 이행 여부 확인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

- 지금까지 상조·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'눈먼 돈'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.
 -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이다.
- 서울시는 5일(금)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'고객 납입금 통지제도'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.
- '고객 납입금 통지제도'는 할부거래법 개정('23.3.21.)으로 '24년 3월 22일(금)부터 시행 중이다.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·여행상품 등

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·횟수,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.

- 선수금을 미통지 또는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〈 선불식 할부거래 고객 대상 통지제도 〉

- ▶ (통보내용) 계약의 종류·납입금액·납입횟수·계약체결일·지급의무자
- ▶ (통보횟수) 연 1회 (연중 1. 1.~12. 31.)
 - 계약금 또는 제1회 선수금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통지
- ▶ (통보방식) 전화·전자우편·팩스·문자·카카오톡 등 ▶ (내역보관) 5년
- ▶ (위반조치) 선수금 미통지 또는 거짓통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※ 만기납입 고객 통지의무
- ※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도 시행일부터 6개월 ('24.9.21)이내에 통지

-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5개 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부터 준수사항 등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상세하게 알리고,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.
- 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리드라이프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법 내용, 할부거래업자 의무 사항과 '고객 납입금 통지제도'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할부거래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,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.

- 한편,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. 특히,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·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.
- 2024년 이후 가입자는 내년부터 통지 대상에 포함되며, 2024년 이전 가입자 중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고객은 9월 21일 이전에 변경된 연락처를 가입 회사에 알려야 한다.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<http://www.ftc.go.kr> → 정보공개 → 사업자정보공개 →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

- 시는 9월 21일(토) 이후,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‘고객 납입금 통지제도’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.
-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“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의무 사항 준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,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”며, “서울시는 현장점검 실시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(공정위)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유의사항
2. 준법교육 실시 사진

☞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-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 - 개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*에서 확인 가능하다.

* <http://www.ftc.go.kr> → 정보공개 → 사업자정보공개 →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

☞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재무정보 및 선수금 보전비율을 확인해야 한다.

- 선수금 내역, 자산 및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,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(상조: 50%, 여행: 30%)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

☞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부도·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해야 한다.

-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확인하고 부도·폐업 등 발생 시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금 수령방법을 통지받을 필요가 있다.

※ 소비자피해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

- 공정위 누리집*에서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(은행명, 연락처 등)을 확인

-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**상에서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가능하며, 은행에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.

* 공정위 누리집(www.ftc.go.kr) > 정보공개 > 사업자정보공개 >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검색으로 피해보상금 지급기관명 및 연락처 검색 가능

** 한국상조공제조합(www.kmaca.or.kr) > 납입내역 조회

상조보증공제조합(www.ksmac.or.kr) > 공제번호통지서 조회

- 평소 계약서, 피해보상증서 등 피해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챙겨두어 예기치 못한 부도·폐업에 대비해야 한다.

☞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.

○ 가입한 회사가 흡수합병 되는 경우, 합병사항에 대한 업체의 공고*를 확인하고, 합병 후 본인의 계약사항이 잘 이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
* 합병하는 경우, 할부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병에 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함.

○ 계약해지 시 환급금,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유무와 관(棺), 수의(壽衣)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.

○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, 판매사원 등 모집인의 허위·과장 광고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.

☞ 대금환급, 위약금, 서비스 이행과 관련된 불만사항 발생 시 소비자상담 센터 상담(국번없이 1372, www.ccn.go.kr)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☞ 창조상품과 일반상품(가전제품, 안마의자, 회원권 등)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.

○ 결합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창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.

- 계약서상 회차별 창조상품과 일반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, 해약환급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○ 특히,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며,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.

☞ ‘만기 시 100% 돌려준다’ 고 광고하는 창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%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.

-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‘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’가 아니라 ‘만기 직후’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
☞ 가입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-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, 혼례, 여행 및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.

- 다만, 선수금의 50%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 상품과 달리,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전비율*의 확인이 필요하다.

* △시행일(2022. 2. 3.)부터 1년까지 : 10%, △1~2년 : 20%, △2~3년 : 30%
△3~4년 : 40%, △4년 경과 후 : 50%

- 따라서 줄기세포 보관, 어학연수 등을 위한 대금 납부 및 결합상품(가전제품, 안마의자, 회원권 등)은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.

-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,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,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.

☞ ‘내상조 찾아줘’ 누리집(www.mysangjo.or.kr)에서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영업 상태 및 선수금 보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.

☞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‘내상조 그대로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□ 개요

- 일 시 : 2024. 4. 5.(금) 15:20~17:30
- 장 소 :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20층 대회의실
- 대 상 :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책임자
- 강 사 : 공정거래위원회 나윤경 사무관, 프리드라이프 이 준 법무실장
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윤재 주무관

□ 교육내용

- (법 개정사항) '24.3.22. 시행된 '선불식 할부거래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'
- (준법사항)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준수사항 및 위반사례
- (납입금 통지 실무) 업계(프리드라이프)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무준비 사례

